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실시 및 추진배경

이현송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추진배경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복지대상자(client)로 연결되는 일방적·수직적 전달체계상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 대처 곤란
 - 복지전달체계의 통합을 통한 복지전달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지역단위의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미흡함.
 - 민간 복지자원의 발굴·연계·조정기능이 미흡함.
- 보건과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일치를 근거로 한 서비스 공급조직 통합으로 보건·복지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의 문제는 빈곤, 질병 등 복합적 성격을 가지며, 노인·장애인구의 증가로 보건·복지연계 수요 증가가 예상됨.
 - 현재 보건소 진료 대상자들의 1/3이 의료보호환자이고 또한 전체의 1/3이 65세 이상자이며, 방문보건사업 주대상자의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 및 주변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정신보건사업의 확대를 추진중임. 한편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의 2/3가 65세 이상이며, 질병이 빈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과 복지의 대상자간 일치 정도는 적지 않으며, 따라서 통합된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도 매우 큼.
- 보건·복지 서비스 환경의 변화와 통합적 서비스 공급요구의 증대
 - 공공부조 중심의 물질적인 단순 지원방식으로부터 결손가족, 노인, 장애인 등 복지 서비스 대상자 및 복지욕구의 다양화가 전개됨. 이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공급체계에 있어서도 전문화가 요청되고 있음.
 - 보건소의 역할로서 전염병 관리나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비중이 감소함. 반면 1995년 「지역보건법」의 제정과 더불어 노인 보건·장애인 재활·가정방문 간호사업 등의 기능 강화가 요청됨.

- 공급자 중심의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지역의 고객중심 서비스 전달 방식으로 전환됨.

2. 추진경위

- 1994. 1.~6.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안을 복지부에 건의
- 1994. 9. 27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안을 정부안으로 확정(신경제추진회의)
- 1995. 2. 27 지도평가위원회 구성
- 1995. 7. 6~11. 22 경기 안산시, 전북 완주군, 강원 홍천군, 대구 달서구, 서울 관악구의 순으로 개소
- 1996. 8. 26~9. 2 중간평가를 위한 현지조사
- 1997. 1. 23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위한 보건관계자 간담회 개최
- 1997. 3. 향후 추진방향 관련, 지방 관계공무원 정책토론회 및 보건복지부내 정책토론회 개최
- 1997. 4. 제8차 시범사업 지도평가위원회 개최
- 1997. 5.6 ~5.13 시범사업 최종평가를 위한 현지조사
- 1997. 5.16 제9차 시범사업 지도평가위원회 개최
- 1997. 6. 시범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결정 ('99년 12월 까지로 연장)

3. 시범사업의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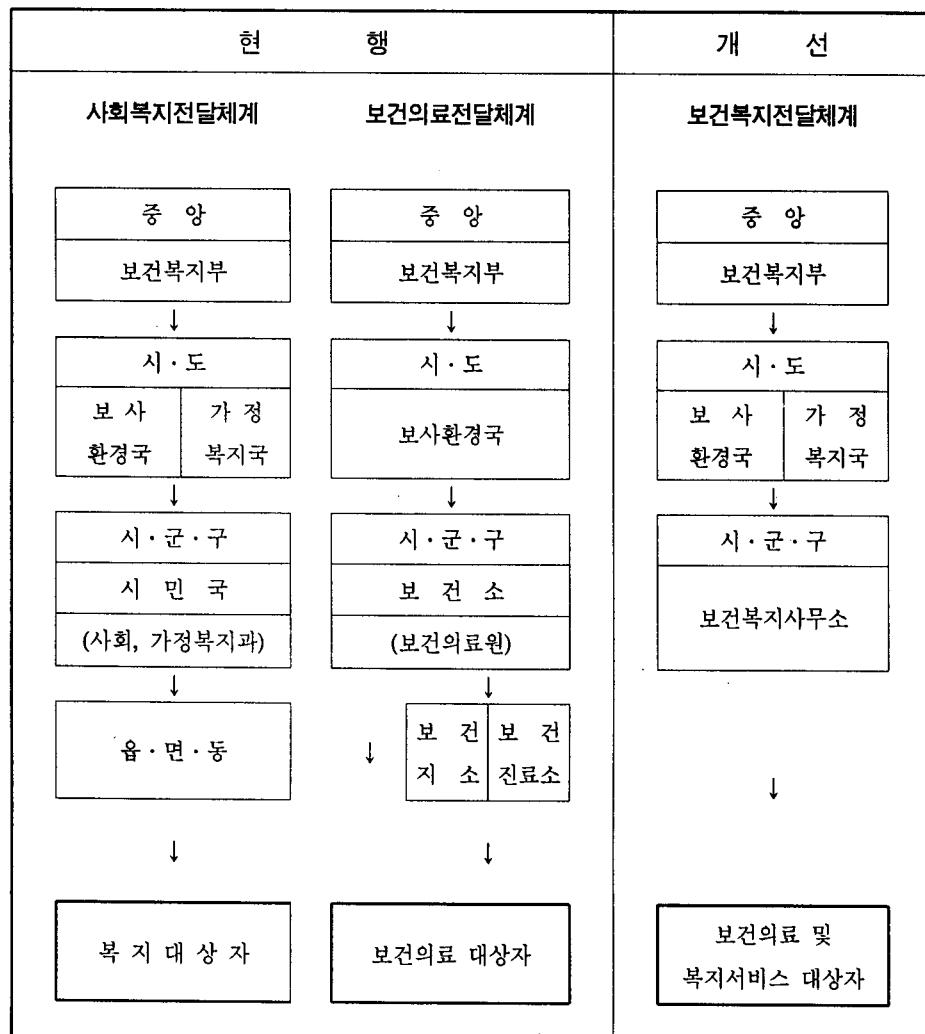
- 기간 : '95. 7. ~ '97. 6.(2년간)
- 지역 : 5개소
 - 대 도 시 : 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 중소도시 : 경기 안산시
 - 농촌지역 : 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

(1) 示範事業 運營의 基本原則

示範事業 운영의 基本原則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 效率的인 福祉傳達體系의 制度化

향후 본 사업의 시행시 예상되는 복지 서비스 수행상의 여건변화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제도를 개발하고, 보건과 복지의 통합 서비스체계 마련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복지 서비스의 제공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시범 보건복지사무소와 관련기관, 인력, 제도간의 소관업무를 명확히 하고, 업무수행 연계체제를 체계화한다.



<그림 1> 示範保健·福祉 傳達體系 比較

나. 效果的인 福祉서비스 프로그램의 開發

지역사회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가정방문사업을 하는 등의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리고 지역 민간복지 인력 및 자원을 발굴하여 연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다. 事業의 效果性 및 妥當性에 대한 分析·評價

시범사업 진행 전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한다. 특히 복지 서비스를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효과와 능률성에 대하여 평가를 하며, 복지투자의 효과성을 분석·평가한다.

(2) 示範事業의 實施段階別 業務擴充計劃

시범사업은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사업범위를 보완·확대해 나간다. 즉, 시범사업 初期段階에서는 기존 업무(시·군·구 및 읍·면·동의 생활보호업무 및 사회복지 관련업무 중 대인복지 서비스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목표로 하며, 안정적인 사업착수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충해 나간다. 이에 따른 기구, 인력, 사업운영체계 등은 단계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감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조정토록 하여 능동적으로 운영한다.

가. 第1期 : 示範事業 定立期

시범사업 개시연도인 제1기에는 업무분장 내용에 따른 추진절차 등을 정립하여, 보건복지업무의 연계체계 구축, 대주민 사업내용 홍보, 참여인력의 업무숙지 등에 중점을 둔 시범사업의 기반을 강화한다. 기존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던 상담 서비스, 실태조사, 대상자 책정, 급여, 사후관리 업무 등 기존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나. 第2期 : 示範事業 調整·擴充 및 프로그램 開發期

시범사업 운영체계의 재정비·확충을 통한 지역복지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강화, 서비스의 질적개선 등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다. 第3期 : 標準모델 開發, 評價 및 本 事業 準備期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보건복지 연계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 본 사업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며, 최종평가 보고서를 제출, 본 사업 전개방안 등을 확정한다.

(3) 示範事業의 組織 및 職制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福祉擔當部署로 福祉事業課(서울시 관악구, 대구시 달서구) 또는 福祉事業係(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홍천군, 전북 완주군)를 기존 보건소 조직내에 설치·운영한다. 복지사업과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하부에 계 및 팀조직을 설치·운영하고, 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하부에 팀제를 운영하여 효율적 운영을 기한다. 사회복지분야의 보건의료 연계 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통합 서비스를 위하여 복지사업과 또는 복지사업계내에 방문간호팀을 구성·운영토록 한다. 시범기간 동안 해당 保健所의 보건담당부서 직제는 현행대로 존치·운영한다.

(4) 示範事業의 人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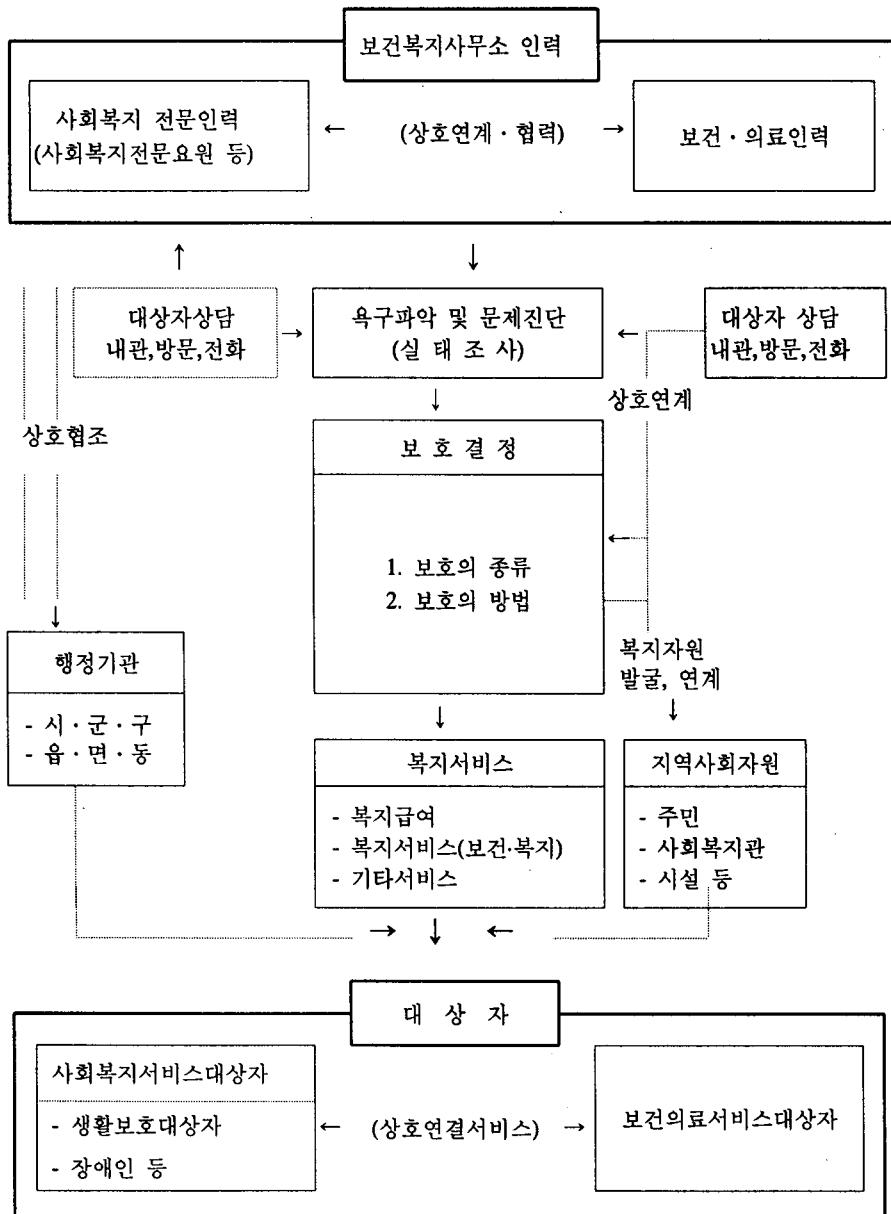
시범사업에 관계하는 人力을 보건과 복지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보건소 조직내에 있던 방문간호팀은 그대로 그 체계내에 있으면서 새로 신설된 복지사업과(계)와 연계하여 활동하도록 한다.

가. 保健分野

해당 보건소의 기존 배치인력 전체를 현행대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악구의 경우 8명의 방문보건팀을 地域保健課내에 구성하고, 달서구와 안산시의 경우는 3명의 방문보건팀을 家族保健係내에, 홍천군은 3명의 保健行政係 간호직을 방문보건팀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완주군의 경우는 2명의 방문보건팀을 家族保健係내에 구성하여 복지사업계와 연계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나. 福祉分野

복지부서 투입인력은 管理人力, 專門人力, 行政支援人力, 機能人力으로 구성된다. 管理人力은 해당직급의 행정직으로서,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로 배치하



<그림 2> 示範保健福祉事務所 서비스提供 體系圖

도록 한다. 專門人力은 시범사업 기간동안 해당 지역내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업무확대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타지역에서 증원 보강토록 한다. 行政支援人力은 신규인력 확보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한다. 타자 및 운전기능 인력의 확보는 필수적으로 구비토록 한다. 특히 차량운전 기능인력은 복지부서의 방문서비스 및 정기순회 서비스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해당 시·군·구에서 확보배치토록 한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인력현황은 〈表 1〉과 같다.

〈表 1〉 示範保健福祉事務所 人力

지역	계 보건	복 지
관악구	115	89 26(과장1, 계장3, 행정직1, 전문요원20, 기능직1)
달서구	95	46 49(과장1, 계장3, 행정직3, 전문요원41, 기능직1)
안산시	48	35 13(계장1, 행정직1, 전문요원11)
홍천군	50	37 13(계장1, 전문요원11, 기능직1)
완주군	63	45 18(계장1, 행정직1, 전문요원15, 기능직1)

(5) 示範事業의 業務分掌

示範保健福祉事務所의 복지사업부서에서는 생활보호관련 업무, 노인, 장애인, 아동, 모자가정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복지연계 서비스 및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 개발업무 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示範事業 投入人力은 최소 규모이므로, 복지 서비스 관련 직접처리업무 이외의 부수적 행정업무(예산, 결산업무 등) 경감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범사업 위상정립시 까지는 시·군·구 사회과, 가정복지과 등의 관련업무에 대한 행정지원의 역할이 필요하며, 지역별 실정에 따라 업무분장 내용, 실시시기 등에 대한 개별조정의 적용이 가능하다.